

〈번역〉

## 名公書判清明集

타카하시 요시로오(高橋芳郎)\* · 임대희\*\* 역

### 목차

- I. 清明集에 대해
- II. 판본에 대해
  - 1. 靜嘉堂문고 소장본
  - 2. 상해도서관소장본
  - 3. 중화서국본
- III. 연구안내 · 연구사
  - 1. 『명공서판청명집』을 읽기 전에
  - 2. 서지학적 연구문헌
  - 3. 譯註 · 색인
- IV. 『명공서판청명집』을 사용한 연구문헌

### I . 清明集에 대해

『名公書判清明集』은 남송대의 판결집이다. 당시, 사법·재판은 행정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재판은 행정의 중요한 일부였다. 송대의 지방행정구획은 통상 최

\* 日本 北海道(홋카이도)大學校 史學科 교수

\*\* 慶北大學校 歷史教育科 교수.

하급이 縣, 그 위에 여러 현을 모아 州(중요한 지역은 府)였고, 다시 여러 州·府를 모아 路라는 행정감찰구획이 설치되어 있었다.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은 각 행정부의 장관이었으므로, 본서에 수록된 판결문을 쓴 사람은 知縣, 知州, 知府 등과 같은 행정부의 장관 혹은 路의 관원이다(路에는 장관을 두지 않았다). 본서에는 때로 재판 과정과 관련지어 그들의 속료가 적은 판결원안도 수록되어 있다. 그들은 대부분 남송 寧宗朝 후반부터 理宗朝 무렵까지 西曆으로 말하면 13세기 전반에 활약한 인물들로, 胡穎(호는 石壁)·蔡杭(久軒)·眞德秀(西山)·劉克莊(後村)·范應鈴(西堂)·宋慈(自牧) 등 당시 뛰어난 행정수완을 발휘해 “名公”이라 불리던 지방관이다. 그들의 “書判” 즉 판결문 중 “清明”(공명정대)한 것을 모았다는 것이 書名の 유래인데, 그러나 당시는 “명공”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실마리가 완전히 없어진 자들도 몇 명 있다.<sup>1)</sup>

『명공서판청명집』이라는 제목의 서적은, 이후 좀더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두 종류의 판본이 존재한다. 하나는 일본의 靜嘉堂문고에 소장된 宋版本인데, 不分卷으로 호흔문 1門만 존재한다. 나머지 하나는 최근에 중국에서 발견된 明版本으로 14권, 官吏門·賦役門·文事門·戶婚門·人倫門人品門·懲惡門 총 7門으로 분류된다. 명판본의 분량은 송판본에 비해 3배 이상에 달하고, 판결집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소위 판결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명령과 지시도 약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원래 “判”이라는 것은, 당시에 행정관이 속료와 민중에게 내리는 결정·판단·명령·지시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 같다. 그것은, 예를 들어 『作邑自箴』 권9에 보이는 “判狀”과 같이, 관사에서 민중에게 내린 조사(보고)명령서나 지시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sup>2)</sup> 이런 예를 들것도 없이, 唐代 吏部

1) 뒤에 소개하는 중화서국본 『명공서판청명집』의 부록1에 「作者名號對照」가 있는데, 경력을 알 수 있는 자 19명, 경력불명 혹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명, 관직명이나 지명으로 표기된 자 10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2) 『작읍자잠』에는 여러 곳에 “判狀”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권9의 「判狀印板」은 다양한 판상의 판목의 형식과 기재되어야 할 내용을 지시한 것이다. 거기에서의 判狀은 稅의 이동, 가산분할, 사망 등과 관련해 판에 보고하라고 명한 조사서이고, 또 지현이 민중들을 훈계하

에서 관리임용의 네 가지 자격, 즉 身·言·書·判 중 “判” 이라는 것은, 원래 관리로서의 판단력을 문장작성기술과 함께 질문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sup>3)</sup> 이때 출제된 문제의 대부분은 가공의 재판안건과 관련된 것인데, 행정 실무와 고전 해석을 포함한 것이었다.

“判”이란 이런 성격의 문장을 총칭하는 것이고, 전술한 바와 같이 본서에도 明本 관리문에는 廣義의 “判”의 개념을 약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서에 수록된 “書判”의 압도적 다수는 在地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판 판결문들로 채워져 있다. 판결문은 최하급 행정구획인 縣의 것도 있는가 하면, 더 상급인 州와 府의 것도 있고, 더 상급인 路급에서 나온 것도 있다. 판결문의 내용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宋本에서는 호훈문이라 불리는 혼인과 상속, 부동산 거래와 채무 등 주로 민사적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 채워져 있고, 명본에서도 전체 14권 중 호훈문이 6권을 차지해 분량은 가장 많다. 그밖에 관료와 서리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계된 것, 세와 역의 부담을 둘러싼 문제, 가족과 종족의 질서를 묻는 것, 승려와 군인의 범죄, 豪民과 形勢戶 등과 같은 在地 실력자가 야기한 형사적 사건, 민간의 종교와 종교결사에 관계된 안건 등, 당시 지방사회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게다가 수록된 판결문은, 粉飾과 節略이 가해지지 않은 판결원문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일본사 연구에서 지카타(地方)문서와 같은 살아 있는 1차 자료가 전무한 남송시대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구체성이 풍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것이 본서가 최상급의 자료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중시되어온 이유이다. 본서로부터는 당시의 법제사와 법 운용의 실태, 재판과 사법행정의 실태 등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재판문의 저자인 지방관료도 포함해서—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재판 당사자로 등장하는 여러 계층 사람들의 가족관계와 인적 네트워크, 혹은 더 넓게 경제활동과 사회관계, 지방정치의 구조, 민중의 종교적 혹은 문화적 환경 등과 같은 측면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찾아볼 수 있다.

는 문장 등이다.

3) 市原亨吉, 「당대의 『判』에 대해」(『동방학보(교토)』 33책, 1963년), 119~198면 참조

본서의 자료적 가치로서 다음으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송대 법제사 연구 면에서 官撰문서의 缺落을 보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본서의 宋本은 정가당문고로만 전해지고, 오랫동안 천하의 孤本으로 일컬어져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不分卷으로 호훈문 1문이 존재한다. 1983년에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는 明本은 14권 7문으로 분류되는데, 송본은 물론이고, 명본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호훈문 총6권이다. 이는 혼인, 상속, 부동산, 임대, 채무 등과 같은 민사적 문제가, 관사에 접수되는 소송안건 중에서 다량인 동시에 중요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한편 남송시대의 대표적인 법률서로 현재에 전해지는 『경원조법사류』는 殘本이고, 정확히 호훈문 부분이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공서판청명집』 호훈문에 인용된 각각의 법령은 이 缺落을 보충하기에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릇 서적이라는 것은, 후세의 우리가 역사연구 자료로서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거기에 적힌 기술이 지니는 가치가 무엇보다 중시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 서적이 만들어진 의미, 그 서적이 출판되기에 이른 시대의 요청 혹은 배경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이런 문제를 논하기에는, 『명공서판청명집』의 출판사정을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송본의 서문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시대배경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그 시대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하나의 열쇠가 된다.

오대 말부터 송대에는, 본서에 앞서 몇 개의 판결집이 간행되었다. 본론문집에도 해설되어 있는 『疑獄集』, 『折獄龜鑑』, 『棠陰比事』가 그것이다. 다만, 이것들은 정사와 필기소설 등에서 取材한 것이어서, 『명공서판청명집』과 같은 판결원문 그 자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지방관경험자의 문집에는, 직접 적은 판결문을 문집에 수록한 것이 발견된다. 黃榦의 『勉齋集』 권32·33, 劉克莊의 『후촌선생대전집』 권192·93, 文天祥의 『문산선생전집』 권12에 서판이 현존하고 있고, 또 『명공서판청명집』에도 적지않은 판결문이 수록되어 있는 范應鈴에게는 『對越集』이라는 제목의 판결집 49권이 있다고 한다.<sup>4)</sup> 이것은, 그들이 종래 “吏

4) 『송사』권 410本傳.

事”에 해당된다고 해서 가볍게 여긴 실무적인 문장인 판결문도, 자신의 문집에 수록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송대에는 또 『작읍자잠』과 『州縣提綱』 등, 지방관으로서의 마음가짐과 행정상의 절차를 기록한 官箴書도 몇 개 간행되었다. 이들 현상은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현상이고, 송이라는 시대에 이런 지방행정에 관한 안내서가 널리 절실히 요구되었던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당시 지방관의 주요 임무는 재판과 징세였다고 하지만, 판결집과 관잠서의 간행은 그들이 임무에 적응하고 시대의 요청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송대에 갑자기 이런 서적이 간행되기 시작한 것은 어떤 시대적 배경 때문일까. 그 하나는, 과거의 전면적인 실시에 따른 새로운 관료군의 배출일 것이다. 과거를 통해 선발된 관료는 “本貫地회피의 法”에 따라 출신지에는 부임할 수 없고, 게다가 약 3년에 한번은 임지가 변경되었다. 이것은 지방관이 임지에서 사적인 세력을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앙정부가 인사를 원활히 행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반면, 3년이라는 임기는 해당지역의 사정을 파악해서 적정하고 유효한 행정을 실시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단점도 있었다. 그 단점을 보충하는 존재가 胥吏였다. 서리는 현지출신의 하급사무원이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밝았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적으로 無給이고, 행정과 관계된 사무적인 면에서의 수수료를 민중으로부터 징수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므로, 상당한 부정과 횡령을 일삼기 쉬웠다. 서리는 징세와 경리를 속이고, 행정과 재판에서도 뇌물을 받고 너그럽게 해 주었다. 지방관은 이런 서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들을 통제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 그런 상황 아래에서 조금이라도 서리에게서 자립하고, 자율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앞에서 본 안내서가 필요했을 것이다. 원래 과거수험 때문에 오랫동안 배양해 온 그들의 교양 중에는, 행정 실무에 관한 지식은 완전히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배경은 민중의 私權 신장과 화폐경제 진전에 의해 사회경제가 복잡해

5) 이 동안의 사정은 중화서국본 『명공서판청명집』의 부록7, 陳智超 「송사연구적 진귀자료」(明刻本 『명공서판청명집』 소개), 661~663면 참조.

졌고, 그런 사태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제가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당나라 양세법 시행(780년) 이후, 토지 매매와 저당(質入)은 합법적인 행위가 되고, 송 정부의 대량의 동전주조에도 자극을 받아 상업활동이 활발해졌다. 실력주의로 뒷받침되는 과거제의 실시는, 문벌에 기초한 명문가를 대신해 신흥 정치 실력자를 배출해 내었다. 이런 사태의 진행은, 사회계층의 상하분해와 유동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사회경제가 복잡해지고 사회계층이 유동화 되어 다양한 모순과 분쟁이 발생했을 것이다. 『명공서판청명집』 명판본에 보이는 다양한 사회층의 등장과 다양한 분야의 분쟁은 이런 북송이후의 정황을 직접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唐代에 완성을 본 율령격식의 법체계는 이미 시대의 진행에 맞지 않았다. 송대에는 율령을 대신해 천자의 명령인 勅이 우선적인 형법이었고, 律은 勅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된 것에 불과했다. 북송의 전반기에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발표되는 勅을 편집한 編勅이라 불리는 형법전이, 다시 북송 희녕연간 이후는 행정법을 포함한 칙령격식이라 불리는 현실과 밀착된 법전이 종종 편찬되고 또 개정을 거쳐 반포되고, 編勅 및 칙령격식의 편찬은 주요한 것만 꼽아도 송 일대를 통해 20여 회에 이른다.<sup>6)</sup> 지방관은 지방행정 중에서, 특히 행정의 중요한 일부인 재판을 담당하고 이렇게 변화가 심한 법규를 운용해야만 했다. 게다가 당시의 재판에는 다음과 같은 곤란한 점이 있었다. 당시 재판에는 민사와 형사의 구별은 기구상으로도, 사람들의 관념상으로도 존재하지 않았다. 살인과 상해와 같은 단순 명백한 형사적 사건이라면, 용의자에게 범죄사실을 자백하게 하고, 적용법을 실수 없이 검출하기만 한다면 거의 재판은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명공서판청명집』 호혼문에 수록된 민사적 사건은 복잡 난해하고, 재판관은 약간의 끈기와 思慮가 필요했던 것 같다. 지금 일본의 재판에서 판결은 한번 언도 되면 그것으로 수정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공소했다 하더라도 이미 판결은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시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당사자가 납득을 한

6) 淺井虎夫, 『지나에서의 법전편찬의 연혁』(1911년 초판, 1977년에 汲古서원에서 影印再版, 전체 395면), 曾我部靜雄 「송대의 법전류」(『동북대학문학부연구연보』 15호, 1964년, 1~48면)참조.

다면 재차 문제를 범정에 가지고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판결은 몇 번이나 되풀이 해 나왔던 것이다.<sup>7)</sup> 따라서 지방관의 수완은, 비록 당사자를 설득시키고 쌍방이 더 이상 다투지 않도록 하는데 있었다. 때로는 법을 보여 위협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도리를 설명하고, 때로는 당사자의 감정에 호소해 쌍방이 양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수완은 경험으로 배우기에는 아마도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다. 『명공서판청명집』과 같은 “名公”의 기량이 학습의 기초가 된 것은 이런 사정도 있었다.

## II. 판본에 대해

『명공서판청명집』의 판본에 대해서는 이후 소개하는 書誌學의 연구에서 이미 자세하게 해설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최소한의 설명만 덧붙이겠다. 『명공서판청명집』 판본으로는 현재 세 종류가 있다.

### 1. 靜嘉堂문고 소장본

송판본에서는, 不分卷으로 호흔문 1門만 남아 있을 뿐이다. 上海商務印書館이 1935년에 影印출판해서 『續古逸叢書』에 수록한 것(전후 대만상무인서관이 『四部叢刊續編』에 수록), 1964년에 고전연구회가 영인출판한 것은, 모두 정가당문고본이다. 고전연구회본에는, 仁井田陞씨에 의해 『永樂大典』보다 새로 수습된 3조의 遺文이 수록되어 있다. 『중국고대사회경제사자료』 제1집(복건인민출판사, 1985년,

7) 일례로 『명공서판청명집』 권13 징약문, 妄訴「挾讎妄訴欺凌孤寡」를 참조하길 바란다. 또 滋賀秀三「청대 사법에서의 판결의 성격—판결의 확정이라는 관념의 부존재」(1974·5년 原載, 이후 同氏『청대 중국의 법과 재판』(창문사, 1984년)에 「판결의 확정력개념의 부존재—특히 민사재판의 실태」라 제목을 바꾸어 수록, 145~262면) 참조.

전체 493면에 수록된 宋本 『명공서관청명집』은, 송판본을 底本으로 하면서 이하에서 서술하는 명판본과 對校한 것으로, 王曾瑜, 陳智超, 吳泰 세 사람에게 의해서 점교된 영인본이다. 이 성과는 이후 서술하는 중화서국본에 반영되었다.

송판본은 호훈문 1문, 서문 등을 합쳐 234면이 들어 있는데, 본문 제134면과 195면 및 232면이 빠져 있다. 앞머리에 “景定年酉日長至, 幔亭會孫引”이라 적힌 殘缺의 서문, 이어 「명공서관청명집석류」라는 제목의 목록이 붙어 있고, 이어 「清明集名氏」라는 제목으로 주희 이하 함께 28명의 別號·휘·자·본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중 본서에 서관이 있는 것은 13명에 불과하다. “목록”과 “이름”은 순서가 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목록에는 立繼 18조, 戶絶 1조, 歸宗 3조, 分析 1조, 檢校 3조, 孤幼 4조, 女承分 1조, 遺囑 3조, 別宅子 1조, 義子 1조, 取贖 8조, 爭業 25조, 違法交易 9조, 僞冒交易 9조, 墳墓 9조, 屋宇 1조, 庫本 2조, 爭財 2조, 婚家 11조, 離 1조, 接脚夫 1조, 雇妾 3조의 22류, 합계 117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34조가 수록되어 있었다. 또, 제70면에는 “여기부터 98면까지는 모두 새로 첨가한 것이다(自此至第九十八竝係新添)”라 되어 있고, 다시 「호훈문」이라 기록하고, 다음 줄에 「쟁업류」라 제목 붙였다. 이것으로부터 현존하는 송본은 『명공서관청명집』이라는 제목의 본래의 판본에서 호훈문만 추출해서 거기에 약간의 서관을 덧붙여 간행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 점은 이후 다시 서술하겠다.

## 2. 상해도서관소장본

명판본으로 14권으로, 관리문·부역문·문사문·호훈문·인륜문·인품문·징악문의 7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은 송판본과 마찬가지로 다시 몇 개의 소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예를 들어보면, 권3의 부역문은 財賦, 稅賦, 催科, 受納, 綱運, 差役, 限田으로, 권11의 인품문은 宗室, 士人, 僧道, 牙儉, 公吏, 軍兵, 廂巡(廂牢附)으로 분류되어, 각각 몇 개의 書判을 수록하는 체재를 취하고 있다. 卷前에 隆慶己巳(3년, 1569)의 張四維의 序가 있고, 卷後에는 본서를 간행한 盛時選

(자는 以仁)의 後序가 있다. 張四維의 서문에 의하면, 『영락대전』을 校錄했을 때 “淸”字編에서 2권을 錄出했는데, 이후 “判”字編에서 대부분의 『명공서판청명집』을 발견해서, 위의 2권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명본은 『영락대전』에서 輯出되어 永경3년에 刻刊된 것이다. 宋本과 대비해서 말하면, 권4·5·8·9가 거의 송본과 합치되고, 송본의 본문 1면에서 69면까지가 명본의 권8에, 70면부터 150면까지가 권4와 5에, 151면에서 233면까지가 권9에 상당한다. 송본 본문에서 빠진 134면과 195면의 2면은 明本에 의해 보충될 수 있지만 232면에 상당하는 부분은 명본에도 없다. 또, 명본과 송본이 중첩되는 부분으로 비교하면, 명본에는 송본에 없는 3조의 서판이 있고, 반대로 송본에는 명본에 없는 6조의 서판이 있다.<sup>8)</sup>

북경도서관에 소장된 명판10권본은 상해도서관본과 동일한 刊本으로, 권11 이하가 손실된 殘本이다. 상해도서관본의 권4·5·8·9를 제외한 부분의 사진판을 필자가 소장하고 있고, 사진판으로부터의 전자복사는 동경대학동양문화연구소 및 교토대학인문과학연구소 등에 소장되어 있다. 빠른 시일내에 14권 전체가 마이크로필름으로 소장되어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명판본 발견의 계기가 된 것은, 陳智超, 王曾瑜, 吳泰 세 명이 송본의 點校를 행할 때 북경도서관 善本열람실 목록에 명판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부터라고 한다.<sup>9)</sup> 이렇게 해서 북경도서관본 10권(殘本)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고, 이어 陳씨 등의 노력에 의해 상해도서관 소장 14권(足本)이 발견된 것이다. 이 발견은, 송사 연구자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기쁨이고, 아마도 남송대와 관계된 문헌 자료의 발견으로서는 20세기 최대의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明本은 청대의 書目등에 의해 그 존재 가능성이 시사만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仁井田陞씨가 소개했듯이,<sup>10)</sup> 鄭振鐸의 『書物을 태우는 글』(압과

8) 구체적인 조문이름은, 현재 가장 손쉽게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용될 수 있는 중화서국본의 목록에 각각에 대해 도장이 찍혀 있고, 주(5)전개 陳智超 논문에서도 지적이 있으므로(649면) 참조하기 바란다.

9) 주(5) 前掲 陳智超 논문, 646-647면.

10) 본문 중의 Ⅲ. 연구안내·연구사의 2. 서지학적 연구문헌으로 제시한 仁井田陞 「영락대전

신서, 1954년)에서는 1920년대 중반경 상해의 것으로, 明刊藍印本の『명공서관청명집』을 100원에 팔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적혀 있다. 현존하는 명본10권은 남인본이고, 정씨가 본 것은 현존 명본이거나 아니면 동일한 간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국립북경대학사회과학계간』 6권 1기(1936년)의 「學術書籍之紹介與批評」란에 있는 李祖蔭씨에 의한 『명공서관청명집』의 소개이다. 이것은 前年 民國24년(1935)에 上海商務印書館이 影印출판한 靜嘉堂文庫所藏本을 소개 비평한 것인데, 거기에서,

『명공서관청명집』은, 내가 아는 바로는, 송대 槧本, 명대 刻本, 清輯의 永樂大典本 세 종류가 있다. 작년 겨울 상해상무인서관이 影印한 것은 宋本이다. 명대 각본은 현재 국립북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원대 判讀을 첨가시킨 경우가 매우 많다. 清輯의 대전본은 현재로서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판본으로 말하자면 명나라 각본은 송본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용으로는 명각본이 송본보다 많다. 듣기로는, 상해대동서국에 『平亭類典』을 간행할 예정이고, 이미 명각본이 그 안에 망라되어 있다고 한다.

라고 서술하고, 이어 『명공서관청명집』의 판본을 해설하면서, 그 하나로

국립북경도서관장 명각본. 앞머리에 隆慶(명 목종의 연호) 己巳(1569) 8월 朔日 江春坊左諭德兼翰林院侍讀蒲坂張四維의 「刻清明集敘」가 있다. 8책10권. 藍字, 권1권2는 관리문이다. 권3 이하는 호훈문이다. 300면에 가깝다. 매면은 18행, 행은 24자 정도로 일정하지는 않다. 이 책은 송원 양대의 명공의 판독을 나열하고 있다. 열개 가운데 8·9개는 민사판결이다. 이것에 의해 당시 민정풍습을 고증할 수 있다. 또 특히 중국의 민법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정확한 자료여서 아무렇게나 돌릴 물건은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씨의 해설은 원대 사람의 判語를 수록하고 있다고 하고, 권3 이하의 호훈문이라 하는 등 부정확한 기술이 많이 있지만, 현 북경도서관소장의 명본10권은 民國시대부터 同館에 소장되어, 1936년에 이렇게 해서 소개된 것

본 『명공서관청명집』에 대해, 참조.

이다. 상해 대동서국이 『平亭類典』에 수록할 예정이었다는 明本 『명공서관청명집』은, 어쩌면 현 상해도서관 소장의 14권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소개된 직후 일본과 중국이 전면 전쟁에 돌입하게 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이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 누씨의 기술이 잊혀져, 『平亭類典』도 간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위의 중일전쟁이 없었더라면, 북평(현 북경)도서관소장의 명본 『명공서관청명집』은 널리 이용되어, 상해도서관본의 발견도 일찍 이뤄졌을 것이다. 애석한 일이다.

### 3. 중화서국본

중국 사회과학원 宋遼金元史 연구실이 点校를 실시하고, 1987년에 중화서국에서 출판된 영인본이다. 상하 2책, 본문 557면, 전체 717면. 본서는 상해도서관에 소장된 명본14권을 底本으로 하면서도, 권4·5·8·9에 대해서는 정가당문고에 소장된 宋本을 底本으로 하고 明本과 對校한 것이다. 眞德秀·劉克莊의 문집 안에 수록되어 있는 書判 등 『명공서관청명집』과 중복되는 것은 校勘하고, 『경원조법사류』에 의해 『명공서관청명집』에 인용된 法文을 교정하고, 仁井田陞拾集의 1條도 補入되어 있다(나머지 2조는 明本에 이미 수록되어 있다). 말미에 부록이 있고, 부록1은, 송본의 殘序사진과 이름·析類목록, 명본의 「刻清明集敘」와 「清明集後序」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2부터 4까지는 黃鞵의 『勉齋先生黃文齋公文集』(판본에 따라 『勉齋集』이라고도 부른다), 劉克莊의 『후촌선생대진집』, 文天祥의 『文文山集』(판본에 따라 『문산선생진집』등으로도 불린다)에 수록되어 있는 서판에 점교를 실시해 게재한 것이다. 부록5는 黃震의 『黃氏日抄』 권78 「詞訟約束」, 부록6은 주희 『朱文公文集』 권100 「約束榜」, 부록7은 陳智超의 「宋史研究的珍貴史料—明刻本<명공서관청명집>소개」라는 제목으로 해제와 해설을 붙였다.

그런데, 상해도서관본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구두점이 찍혀지고, 또 교정이 가해져 있다. 그 교정은 대부분의 경우 1자를 수정한 것인데, 때로는 여러 자를 수정한 경우가 있고, 또 付箋이 붙어 있는 것도 있다. 이 교정자는 현존하는 송본과도

명본과도 다른 판본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sup>11)</sup> 그것이 어떤 판본이었을까, 또 언제 교정이 실시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중화서국본은, 편집자의 판단에 의해 상해도서관본의 原校를 채용한 부분과 채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것은 모두다 注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1자의 교정에 대해 거의 注記가 없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보면, 권7 호훈문 立繼 「官司幹二女已撥之田與立繼子奉祀」는 상해도서관본에서는 다음과 같다. 독점은 원래 교정자가 실시한 것이고, 괄호 안의 문자는 원래 원문 우측에 添書되어 있는 것이었다.

拖詳案牘，黃行之無嗣，有女二人，其長九歲，次幼，今爲立昭穆相當人爲其後，今就二女名下，幹(幹)未詳議得奩具三分之一，與立繼子爲蒸嘗之奉，其于繼絕之義，均給諸女之法，兩得之，而黃氏一脈可繼，市房長從公分析。申。

중화서국본(215면)에서는, 본문안의 “幹” 및 “詳”자는 原校에 따라 “幹” 및 “議”자로 고쳤지만 注記는 없다. 표제의 “幹”자도 또 본문과 마찬가지로 “幹”자로 고쳐야 할 것이다. 또 “其于繼絕之義”의 “于”를 “於”로 고쳤지만 이것도 注記가 없다. 이것은 일례로, 그다지 심한 예는 아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있지만, 중화서국본은 대부분 본서를 잘 교정한 것으로 신뢰할 만한 판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독점을 붙이거나 교정주기에 약간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위의 조에서 “其於繼絕之義，均給諸女之法兩得之”라 되어 있지만, “其于繼絕之義·均給諸女之法，兩得之”라는 것이 의미에 맞

11) 예를 들면 필자가 일찍이 상해도서관의 마이크로필름을 열람했을 때의 기억에 따르면, 권5 호훈문·爭業下 「經二十年而訴典買不平不得受理」의 표제 아래 「此條當在前」이라고 기입되어 있다. 교정자가 가진 판본은 이 조의 앞條의 전후 부분일 것이다. 또 권9, 호훈문·取讀 「妄執親隣」條에 “…據此田直官會三百貫，今自寶慶二年三月收讀…”의 “貫”자 아래에 선을 그어, “今自寶慶以下卅行接前第四編弊矣之下”라 注記하고, 다음의 “典買田業合照當來交易或見錢或錢會中半收讀”의條에 “…下不拂於人情，則通行而無弊矣…”의 “矣”자 밑에 선을 그어, “弊矣以上接後第四篇今寶慶二年三月收讀之上”라 주기고 있다. 교정자의 판본에서는 이 두條의 앞뒤가 바뀌어 있다는 것과 내용에 착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는 것 같고,<sup>12)</sup> 212면의 1~2행면의 “…阿劉出官, 抵暱甚至, 誣訴…”는 “…阿劉出官抵暱, 甚至, 誣訴…”로 해야하고, 217면 11째줄의 “欲與移文通城縣取, 會却施行”은, 교정 미스가 아니면 “取會”가 동사라는 것을 간과한 예이다. 또 239면의 주(1) 은, 韓時鯤이 자기의 訴狀에서 “伯父韓知丞”라 말하는 이상 교정할 필요는 없고 불필요한 주석이다. 또 州·府에 고소한 안건이 현으로 돌아온 경우와, 현이 주와 부로 조회를 행한 경우에 나오는 “使州”·“使府”를, 중화서국본은 모두 “使·州”·“使·府”라 되어 있다. 路의 官員(제점형옥사 등)과 知州와 知府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만, “使州” 혹은 “使府”의 “使”자는, 본래 한 대의 “使君”과 唐代 舍外의 官이라는 使職처럼 조정에서 지방으로 파견된 것을 의미하고, 남송 시대에는 이것이 경칭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들 두 글자는 지주·지부를 가리킨다.

그런데 송본과 명본의 관계에 대해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점이 있다. 송본의 서문은 3면 가운데 마지막 1면만 남아 있고, 글자도 거의 마멸되어 단서가 될만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다.<sup>13)</sup> 그 중에서 “景定年酉日長至, 幔亭曾孫引”등 마지막 1구는, 이 서문이 “幔亭曾孫”이라는 인물에 의해 경정2년(1261) 하지날에 적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陳智超씨의 고증에 의하면 “幔亭曾孫”은 복건 송안현 사람이고, 거기에 『명공서판청명집』 안의 서판의 작자 중에는 복건인이나 예전에 복건의 관리였던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는 사실에<sup>14)</sup> 수긍해야 할 것이다. 『명공서판청명집』의 편자라고 생각되는 “幔亭曾孫”은 유명한 인물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sup>15)</sup> 오히려 편자는 실명을 내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12) 구독점의 표시방법은 일본의 형태로 바뀌어 있다.

13) 앞의 본문에서 소개한 『중국고대사회경제사자료』 제1집에 수록된 「송본 <명공서판청명집>」에 초서판에서 적힌 殘序를 판독한 것이 게재되어 있다.

14) 주(5) 전계 陳智超논문, 650~651면.

15) 『명공서판청명집』 이름란에 적힌 인물은, “幔亭曾孫”의 서문 집필시기 경정2년부터 약간 선행한 시대의 사람이 많다. 寧宗朝 후기부터 理宗朝에 걸쳐, 서력으로 말하면 1210년부터 1260년경에 활약한 인물들이다. “幔亭曾孫”이 『명공서판청명집』의 편자였다면, 그는 이름란에 실린 인물들과 교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교제가 있던 인물들과 친교가 없었다면, 거의 같은 시기 사람들의 서판을 수집할 수 없었을 것이다. 陳智超씨는 주(5) 전계논문에서 “幔

같다. 아마도 주현관이 幕友같은 職에 있던 자인지, 煩雜하고 인내성이 필요한 재판실무의 지침서로 할 만한 것을 묶은 것이 『명공서관청명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한다.

그런데 陳智超씨가 송본의 “이름”란에 성명이 있는 28명 중 13명만 서판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송본은 殘本이라 하고 있다.<sup>16)</sup> 그러나 長澤規矩也씨는 고전 연구회본에 붙은 「판본해설」에서

이 책은 예전부터 殘本으로 전해진다. 확실히 청명집으로서는 내용적으로 殘本이고, 목록 앞머리의 「析類」라 제목이 붙어 있고, 다음 줄에 「목록」이 있고, 세 번째 줄에 「호훈문」, 이므로, 이 판본은 호훈문만 있는 단행본이라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서술했다. 長澤씨가 말하는 것처럼, 앞머리의 기재형식에서 보면 정가당문고본은 단행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① 경정2년에 “幔亭會孫”에 의해 편찬 출판된 호훈문 이외의 分門을 포함한 『명공서관청명집』을 기본으로, 누군가의 손에 의해 호훈문만 추출 간행되었든지, ② 경정2년 이후에 호훈문 이외의 分門을 포함한 『명공서관청명집』이 출판되었고, 거기에서 “幔亭會孫”이 호훈문만 중시해서 추출 간행했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름란”이 그대로 실렸다고 한다면 서문도 원문을 사용했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렇다면 ①의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튼, 전술한 바와 같이 송본 70면에서 “自此至第九十八並係新添”이라고 하는

“亭會孫”이라는 詹琰夫의 이름을 들면서도, 그가 편찬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적고 있다 (650~651면). 또 이 시기“幔亭”이라 불린 인물에는 詹師文이 있다. 『閩中理學淵源考』 권 30, 및 民國30년 刊 『崇安縣親志』 권23·宦績에 의하면, 송안현의 인물로 경원2년(1196)에 진사, 가정2년(1209) 강서제점형옥사의 검법관으로 임명되어 “讞獄無冤”이었을 것이라 한다. 眞德秀(1178~1235년)과 鄒應龍(1172~1244)와 親交가 있고, 著作에 『幔亭遺稿』, 『通典類要』가 있었다고 한다. 生卒年 미상. 경력·교우 모두 『명공서관청명집』의 편자로 어울리지만, 만일 20세에 과거에 급제했다 하더라도 경정2년에는 86세가 되어, 약간 시기가 이른 것처럼 보인다. 참고로 적어둔다. 아무튼 『명공서관청명집』은 崇安의 詹씨 일족 중 누군가에 의해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16) 주(5)전계 陳智超논문, 651면.

이상, 현존하는 송본은 원본 『명공서판청명집』에서 호흔문만 추출해서, 거기에다 새로운 서판을 덧붙여서 단행본으로 간행된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다른 分門도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설령 다른 分門이 간행되었다 라도 호흔문만 남은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송대에 「婚田債負」, 명청대에 「戶婚田土의 案」이라 불리던 민사적인 안건이야말로 재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주현관이 가장 머리 아파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에, 陳智超씨는 송본에는 없는 明本の 호흔문, 즉 권6·7의 작자가 전원 송본의 “이름”란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 두 권에 수록된 서판은 시대가 다른 것에 비해 약간 늦고, 경정2년에 간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 두 권의 분류가 나머지 각 권의 분류와 중복된다는 점, 이 세 가지 점에서부터 남송대에 새로운 내용을 보충한 再刻本이 출판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sup>17)</sup> 이 고증은 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고찰에 의해 『명공서판청명집』이라는 제목의 서적은, ① 우선 경정 2년 무렵에 호흔문 이외의 分門을 포함하는 형태로 간행되고, ② 이후 그 안에서 호흔문만 단독으로 추출되어, 다시 새로운 판어를 더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현존하는 송판본이다. 그 후 호흔문만의 단행본은 독립해서 현재까지 전해지고, ③ 현존하는 송본의 바탕이 되는 원본 『명공서판청명집』은 재차 새로운 판어를 가해 남송대에 재차 간행되어, 그것이 명초에 『영락대전』의 “淸”字韻과 “判”字韻에 수록, ④ 이우고 張四維에 의해 『영락대전』으로 輯集되고, 盛時選에 의해 14권본으로 융건3년에 출판되었을 것이다. 청초 姚際恆의 『好古堂書目』에 「宋名公書判清明集十四卷四本」이라고 적힌 것은 이 명판본일 것이다. 그러나 『四庫全書總目提要』권101 子部法家類의 存目에 17권이라 되어 있고 「輯宋元人案牘判語, 分類編次」라고 적힌 『명공서판청명집』은, 마찬가지로 『영락대전』에서 輯出된 것인데,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과연 남송대의 再刻本 이후에 원나라 사람의 判語를 덧붙인 『명공서판청명집』이 간행된 것인지, 아니면

17) 同前, 655~656면.

四庫館의 관원이 14권을 17권이라 잘못 적어, 漫然히 원대 사람의 판어를 모아 기록한 것인지,<sup>18)</sup>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 Ⅲ. 연구안내 · 연구사

#### 1. 『명공서판청명집』을 읽기 전에

『명공서판청명집』을 읽기 위해 본서가 판결집이라는 사실에서, 우선 송대의 재판제도와 법제에 대해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문제에 대해 첫째로 참조해야 할 연구는, 宮崎市定の 「송원시대의 법제와 재판기구—元典章성립의 시대적·사회적 배경」(1954년에 原載, 이후 宮崎市定の 『아시아사 연구』 4집, 동양사연구회, 1964년에 수록, 170~305면)일 것이다. 戴建國의 「송대 형사심판제도 연구」(『文史』 31輯, 1988년, 115~142면)는, 관료에 적용되는 “衆證定罪”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는 등 약간의 문제성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망라된 연구이다. 또 徐道鄰의 「宋律中的審判制度」(『동방잡지』 복간4권9기, 1970년, 18~28면), 「鞫讞分司考」(『동방잡지』, 복간5권5기, 1971년, 40~45면), 「宋朝의縣級司法」(『동방잡지』, 복간5권9기, 1972년, 19~28면), 「讞異別勘考」(『동방잡지』, 6권2기, 1972년, 20~28면) 등의 일련의 연구도, 각각의 논점에 대해서는 異論도 있겠지만 인용자료가 풍부해서 참조할 만한 논고라고 생각된다. 이상에 의해 송대의 재판제도를 거의 파악할 수 있지만, 한편 송대 재판의 성격과 특질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專論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淸朝를 직접대상으로 한 것인데, 滋賀秀三의 『청대중국의 법과 재판』(創文社, 1984년, 전체 401면)이 있고,

18) 주지한 바와 같이 『사고전서총목제요』의 存目에는, 『명공서판청명집』에 대해 “이 詞는 일찍이 文采儷偶로서 工이라 한다. 당시의 형태는 이와 같다”라고 적혀 있다. 이것은 부정확한 평인이고, 사고관의 담당관원은 『명공서판청명집』을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권수를 誤記하고, 宋人을 元人으로 잘못 보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거기에서 나온 논점들은 모두 그대로 송대에 적용시켜도 된다고 생각한다. 滋賀秀三의 「중국법문화의 고찰—소송의 방식을 통해」(『동서법문화』, 유비각, 1986년, 37~54면)은, 학회에서의 구두보고를 문장화한 것인데, 유럽과 비교해서 중국의 법과 재판의 특질을 논한 것으로, 그의 견해가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재판의 결과로서 당사자에 대해 어떤 형벌이든간에 내려지기 마련인데, 송대의 형법에 대해서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논한 것은 아직 없다. 당장에는 仁井田陞의 「중국에서의 형벌체계의 변—특히 『자유형』의 발달」(1939년에 原載, 이후 仁井田陞의 『중국법제사 연구—형법』 동경대학출판회, 1959년에 수록, 1980년에 보정판, 47~152면), 자허수삼의 「형벌의 역사—동양」(『형벌의 이론과 현실』 암과서점, 1972년, 94~120면)이 전체를 파악하는데 편리하다. 『송사형법지주석』 正·續集(正集—상해사회과학원정치법률연구소편, 군중출판사, 1979년, 전체 105면, 속집—상해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편, 군중출판사, 1982년, 전체 148면)에는 송대 형법의 해설과 함께 『송사』의 형법지 본문에 대해 주석하였다. 또 교토대학인문과학연구소의 「중국근세의 법제와 사회」 연구반 「『송사형법지』역주고(상)」(『동방학보(교토)』 64책, 1992년, 345~467면)은, 『송사』 형법지의 현대일본어판으로 注釋되어 있다.<sup>19)</sup>

이외에도 재판과 법제에 관한 연구는 많은데, 여기에서는 이상의 근본적인 연구만 들고 나머지는 모두 생략하겠다. 또 『명공서판청명집』은 난해한 부류에 속하는 자료이므로, 그것을 모두 이해하기 위한 工具書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서에 직접 대응되는 기본적인 공구서는 없으므로, 거기에 대해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은 그만두겠다. 뒤에 언급할 청명집 연구회편 「『명공서판청명집』(징악문)역주고(1)」에 소개되어 있는 것과 또 川村康의 「송대의 판어를 읽기 위해」(『동양법제사연구회통신』 5호, 1991년, 16~18면)를 참조하기 바란다.

19) 역자주 : 교토대학인문과학연구소의 「중국근세의 법제와 사회」 연구반 「『송사형법지』역주고(하)」(『동방학보(교토)』 65책, (1993년)가 이미 출간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박영철의 「송사형법지역주 I」(『중국사 연구』 19집, 2002)가 있고 이석현에 의해 「송사형법지역주 II·III」이 준비 중에 있다.

## 2. 서지학적 연구문헌

우선 송판본과 관련해서 仁井田陞의 「영락대전본『명공서판청명집』에 대해」(仁井田陞의『중국법제사연구－법과 관습·법과 도덕』동경대학출판회, 1964년 수록, 437~441면)는, 북경도서관소장의 『영락대전』에서 『명공서판청명집』의 유문3조를摘錄소개한 것이다. 長澤規矩也의 「판본해설」, 仁井田陞의 「명공서판청명집해제」는 모두 1964년에 고전연구회가 정가당문고본을 영인출판했을 때 책 마지막에 붙여 놓은 것이다. 周藤吉之의 「고전연구회간·정가당문고장『명공서판청명집』에 대해」(1964년에 원재, 이후 周藤吉之의『송대사연구소』동양문고, 1969년에 수록, 646~654면)는 주로 서판 작자의 경력을 조사·소개하고 있다. 뒤에 언급되는 梅原郁역주의『명공서판청명집』의 서문도 간결하면서 요점을 잘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다.

명판본에 대해서는, 陳智超의 「명각본『명공서판청명집』述略」(『중국사연구』 1984년 4기, 137~152면) 및 「송사연구적 진귀자료－명각본『명공서판청명집』소개」(중화서국본 『명공서판청명집』의 부록7, 645~686면)이 있다. 전자는 후자의 요약이다. 본 논문에서는 명본의 발견 경위, 송본과 명본의 구성·내용, 판본의 계승관계, 송본과 명본의 같거나 다른 부분, 본서에 의해 알려진 역사적 사실, 서판작자의 경력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정밀하게 검토되어져 있다.

## 3. 譯註·색인

정가당문고본의 현대일본어역 및 역주로는, 梅原郁역주의『명공서판청명집』(동봉사, 1986년, 전체 380면)이 있다. 원문인 逐語譯으로 자세한 주석이 붙어 있다. 본서에는 원문은 인용되어 있지 않고, 권말의 색인은 역주본문의 색인이다. 본서를 비평한 것으로 高橋芳郎의 「梅原郁역주『명공서판청명집』訂誤」(『나고야대학 동양사연구보고』 12호, 1987년, 112~146면), 滋賀秀三의 「梅原郁역주『명공서

판청명집』(『법제사연구』 37호, 1988년, 220~226면), 滋賀秀三의 「역주 『명공서판청명집』 서평의 補」(『동양법제사연구회통신』 3호, 1989년, 13~14면)가 있고, 관련해서 梅原郁의 「拙譯 『명공서판청명집』에 대한 高橋芳郎씨의 『訂誤』에 대해」(『나고야대학 동양사연구보고』 13호, 1988년, 125~133면)가 있다.

중화서국본의 현대일본어역 및 역주는, 청명집 연구회(大澤正昭 他) 『명공서판청명집』(징악문) 역주교(1)청명집연구회발행, 1991년, 전체 51면)과 (2)청명집연구회발행, 1992년, 전체 39면)이 있고, 권12의 일부를 발행했다. 이후 계속해서 역주가 발표될 예정이다.<sup>20)</sup> 본서는 중화서국본의 원문을 인용하고, 그 원문을 逐語譯한 것이고, 자세한 주석이 붙어 있다. 권말 색인은 역주본문의 색인이다.

고전연구회본의 색인에는 梅原郁의 『명공서판청명집색인교』(私家版, 1982년, 전체 105면), 명본의 사진판으로부터의 전자복사본 색인에는 梅原郁의 『명간본청명집색인교』(私家版, 1986년, 전체 187면)이 있는데, 모두 아직 발행되지 않아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 존재가 알려져 있다.<sup>21)</sup>

#### IV. 『명공서판청명집』을 사용한 연구문헌

본서는 남송시대의 연구로서 귀중한 정보원이므로 많은 연구자에게 이용되어 왔는데, 여기에서는 본서를 주로 직접적으로 이용한 연구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겠다. 판결집이라는 『명공서판청명집』—이하 본 자료라고 말한다—이 지닌 성격상

20) 역자주 : 「『명공서판청명집』(징악문)역주교(3)·(4)·(5)가 각각 1993년·1994년·1995년에 이미 출간되었다. 호훈문에 대한 번역으로서는 高橋芳郎의 「『명공서판청명집』 권6 호훈문 譯注稿(1)」(北海道大學文學部紀要 48-2, 1998)과 「『명공서판청명집』 권6 호훈문 譯注稿(2)」(北海道大學文學部紀要 48-3, 1999), 「『명공서판청명집』 권7 호훈문 譯注稿」(北大學文學研究科紀要 103, 2001)이다. 청명집연구회의 「『명공서판청명집』 인품문 譯注稿(상)」, 2000이 있다.

21) 역자주 : 石川重雄編, 『宋元釋語彙索引—付 「『명공서판청명집』, 징악문 譯注稿』總合索引』(汲古書院, 1994)도 있다.

우선 법제사가의 주목을 끈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仁井田陞의 「청명집호훈문의 연구」(1933년에 原載, 이후 仁井田陞의 『중국법제사연구—법과 관습·법과 도덕』, 동경대학출판회, 1964년에 수록, 371~436면)은, 본 자료에 보이는 법률에 의존하면서 남송시대의 저당(質)·선매권·부동산을 둘러싼 출소기간 등의 문제를 11절에 걸쳐 검토하고 있다. 이 논문은 仁井田陞 자신이 서술하듯이, 이후 그의 “연구의 하나의 큰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sup>22)</sup> 仁井田陞의 『당송법률문서의 연구』(동방문화학원 동경연구소, 1937년, 전체 856면), 『지나신분법사』(동방문화학원, 1942년, 전체 997면)는 그에 따른 성과이고, 『중국법제사연구』 전4책(동경대학출판회, 1959~64년)에 수록된 논문에도 여러 곳에 『명공서판청명집』이 사용되었다.

송본이 호훈문을 남기고 있었던 점은 가족법의 연구에 있어서는 다행이었다. 滋賀秀三의 『중국가족법론』(홍문당, 1950년, 전체 184면)과 그것을 다시 상세히 전개한 滋賀秀三의 『중국가족법의 원리』(창문사, 1967년, 전체 631면)는 본 자료를 빠짐없이 활용한 연구서로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 滋賀秀三의 『중국가족법론』은 “宗”의 개념을 논리의 중축으로 하면서, 中田薰으로부터 仁井田陞으로 계승되어온 중국의 “同居共財=가족공산제론”을 비판하고, 동시에 여자의 가산계승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仁井田陞과의 사이에서 논쟁으로 발전되었다. 仁井田陞의 「송대의 가족법에서의 여자의 지위」(1952년에 원재, 이후 仁井田陞의 『중국법제사연구—노예농노법·가족촌락법』 동경대학출판회, 1962년에 수록, 365~392면)는, 이 시기 여자의 가족계승권의 존재를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滋賀秀三은 「중국가족법보고(1)~(4)—仁井田陞 『송대의 가족법에서의 여자의 지위』를 읽고」(『국가학회잡지』 67권 5·6호, 9·10호, 11·12호, 68권 7·8호, 1953~55년, 각 1~31면, 55~83면, 89~123면, 33~57면)에서 상세하게 반론했다. 仁井田陞은 다시 「중국사회의 ‘동료’주의와 가족—단체적소유의 문제를 포함해서」(1957년에 원재, 이후 仁井田陞의 전계서에 수록, 393~466면)를 저술해서 가족법전반에 대한 반박을 하였다. 滋賀秀三도 1967년의 전계서에서 다시 자

22) 『중국법제사연구—법과 관습·법과 도덕』의 보정판(동경대학출판회, 1980년, 전체 773면)의 375면에 덧붙여진 補入文.

신의 주장을 전개했다. 그 후 최근에 명본 『명공서판청명집』의 발행에 의해 여자의 재산권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柳田節子は 「남송기 가산분할에서의 女承分에 대해」(『劉子健박사송수기념송사연구논집』 동방사, 1989년 수록, 51~62면)와 「송대여자의 재산권」(『법정사학』 42호, 1990년, 1~14면)에서 과부가 고유의 재산권을 가진다는 것, 여자에게도 일정한 가산계승권이 인정된다는 것 등을 신출 자료를 사용해 논하고 仁井田陞의 설을 재평가하며 결론짓고 있다. 袁俐는 「송대 여성재산권 述論」(『송사연구집간』 2호, 1988년, 271~308면)에서 선부른 결론을 피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하면서 전체적으로 여자의 재산권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永田三枝는 「남송기여성의 재산권에 대해」(『北大史學』 32호, 1991)에서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서 당대부터 명청대에 이르는 시간 속에서 생각하면 송대여자의 재산권은 오히려 저하되었다는 점과 여자의 재산권을 보여주는 자료에는 엄밀하게 조건을 붙여서 볼 필요가 있다고 논하면서, 결과적으로는 滋賀秀三이 주장하는 바와 비슷한 해석을 내렸다. 川村康도 「송대에서의 양자법— 판어를 주로 사료로 해서」(상(하)(『와세다법학』 64권 1·2호, 1988·89년, 각 1~55면, 1~138면)에서 가족법연구의 일부를 이루는 양자문제를 『명공서판청명집』을 잘 인용·번역하면서 법제사의 입장에서 논하였다.

그런데, 재판 판결집인 본 자료를 사용해 재판 제도와 수속 혹은 성격과 실태를 연구한 것은 매우 적다. 형법에 대해서도 본 자료의 이용이 적다는 것에 의외라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제도사적인 연구는 다른 官撰문서 등에 의거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고, 실제로 그런 폭넓은 연구의 축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서 愛宕松男는 「봉안~척단의 제도— 송대에서의 집행유예형에 대해」(『동방학회창립25주년기념동방학논집』 동방학회, 1972년, 201~216면)에서 송판본에 보이는 封案의 제도를 刑의 집행유예라 파악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川村康은 「宋代折杖法初考」(『와세다법학』 65권 4호, 1990년, 77~153면)에서 송대의 특색 있는 형법인 折杖法에 대해, 본 자료에 보이는 구체적인 예를 소재로 해서 논하였다. 何忠禮는 「論南宋刑政未明之原因及其影響— 由<명공서판청명집>所見」(『동방

학보(교토)』 61책, 1989년, 539~568면)에서 남송대의 형법과 관련된 정치정황의 不備를 다양한 각도에서 논하였다. 이후는 법과 제도의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면에서의 운용과 관계된 연구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본 자료에는 다양한 사회층이 등장하는데, 陳智超는 「南宋'喫菜事魔'新史料」(『북경사원학보』 1985년 4기, 29~31면)은, 명본 권14 징악문 「妖教」 중에서 「喫菜事魔」에 관한 2 서편을 소개·분석하였다. 또한 그는 「宋代的書鋪與訟師」(『劉子健박사 송수기념송사연구논집』 동봉사, 1989년 수록, 113~119면)에서 서포가 소송 중에 각종 官私의 문서를 감정하는 책임을 졌다고 논하고, 또 송사라고 불리는 자의 구체적인 활동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南宋二十戶豪橫的分析」(『송사연구논문집』 절강인민출판사, 1987년, 248~266면)에서 명본 권12 징악문의 「호횡」에 보이는 호횡·豪民이라 불리는 자의 실태와 성격을 검토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梅原郁의 「송대의 형세와 관호」(『동방학보(교토)』 60책, 1988년, 399~438면)에도 언급이 있다. 高橋芳郎은 「송대의 士人신분에 대해」(『사립』 69권 3호, 1986년, 39~70면)에서 권11 인품문의 「士人」 등의 부분을 인용해서, 당시 사인의 사회적 및 법적 신분을 고찰하였다. 또한 그는 「무한의 법과 茶食人—송대재판제도연구(1)」(『史朋』 24호, 1991년, 1~9면)에서 “茶食人”이라는 자는 保識人과 동일한 자로서 숙박업을 겸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였다. 佐藤明은 「전 근대중국의 지역지배의 구도—남송기·강남동서로를 중심으로」(『중국사학』 1권, 1991년, 173~190면)에서 『勉齋集』에 수록되고 있는 書判과 본 자료를 이용해 표제 문제를 검토하였다.

사회경제사의 분야에서도 『명공서관청명집』은 널리 활용되어 많은 논문에 인용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명청시대의 一田兩主制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본 자료에 “田骨”과 “田祖”와 같은 단어가 여러 곳에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周藤吉之는 「남송의 田骨·屋骨·園骨—특히 改典就賣와의 관계에 대해」(1960년 원재, 이후 周藤吉之의 『당송사회경제사연구』 동경대학출판회, 1965년에 수록, 213~232면)에서 부동산의 지당[典,質入]을 전환하여 매각할 때 “田骨을 팔았다”등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논하였다. 이에 비해, 草野靖은 「남송문헌

에 보이는 田骨·田根·田祖·田底」(『구마모토대학법문논총』 28호, 1978년, 54~81면)에서 이들 단어는 田産 소유권의 소재를 나타내는 근원적인 문서를 가리킨다고 하고, 이어 그는 『중국근세의 기생지주제—田面관행』(급고서원, 1989년, 전체 1138면)에서 이들 단어는 絶賣의 표적물을 나타내고, 地權은 典業과 絶業을 나누어 생각했다고 논하고 있다(298~327면).<sup>23)</sup> \*\*\*

---

23) 역자주 : 최근에는 臺灣 宋代官箴研讀會에서 『宋代社會與法律—名公書判清明集討論』(東大圖書公司, 1998)라는 책이 발간되었다.

\*\*\* 이 글을 번역하여 수정하는 단계에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우성숙 씨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았다.